###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장학금 규정

서울과학기술대학교(학생지원과), 02-970-6055

제정 2012. 3. 1.

개정 2017. 7. 11.

개정 2018. 8. 16.

전부개정 2019. 9. 18.

개정 2021. 3. 4.

개정 2021. 9. 1.

학칙개정 2021. 10. 1.

# 제1장 총칙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생의 면학을 권장하고 유능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「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」 제86조에 따라 장학생의 선정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학칙개정 2021. 10. 1.> 제2조(적용범위) ① 이 규정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(이하 "본교"라 한다)에 재학 중인 학사과정 학생에게 적용한다. <개정 2021. 9. 1.>
- ② 장학생의 선정과 장학금의 지급은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각 장학단체 또는 장학금 기탁자가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.
- 제3조(장학금의 구분) ① 이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장학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
- 1. 등록금을 감면하는 장학금
- 2. 각종 교외단체(또는 개인)에서 지급하는 장학금
- 3. 재단법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발전기금에서 지급하는 장학금
- 4. 매월 또는 매학기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장학금 <신설 2021. 3. 4.>
  - 가. 학내 각종 업무에 종사하게 하고 지급하는 장학금
  - 나. 학업장려 및 생활비 보조를 위하여 지급하는 장학금
- 5. 그 밖의 장학금
- ② 장학금의 종류별 분류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#### 제2장 장학위원회

- 제4조(위원회 설치) 장학생의 선정과 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- 제5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 - 1.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
  - 2. 장학금에 관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
  - 3. 각종 장학기금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
  - 4. 그 밖에 장학에 관한 중요 사항
- 제6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②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되고, 교무처장·기획처장·학생부처장 및 학생지원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, 그 밖의 위원은 단과대학장의 추천에 따라 총 장이 임명한다.
-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-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.

-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장학복지팀장으로 한다.
- 제7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#### 제3장 장학금

- 제8조(지급기준 및 지급액) 장학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액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.
- 제9조(지급방법) 모든 장학금은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.
- 제10조(수혜기간) 장학금의 수혜기간은 특별히 기간을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1개 학기로 한다.
- 제11조(이중수혜 금지)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이중으로 지급 받을 수 없다. 다만,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## 제4장 장학생

- 제12조(자격)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
  - 1.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르며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사람
  - 2. 경제사정이 곤란하여 학비마련이 어려운 사람
  - 3. 등록금의 법정 감면 대상자 중 자격에 적합한 사람
  - 4. 학교의 명예를 떨쳤거나 학교발전에 공로가 있는 사람
  - 5. 품행이 바른 학생으로서 교내 각 부서에서 근로하는 사람
  - 6. 그 밖에 총장이 인정하는 사람
- 제13조(장학생 선정제한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

- 학생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. 다만,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한다. <개정 2021. 3. 4.>
- 1. 근신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의 해제일이 속한 학기와 그 다음 학기(다만, 휴학기간은 제외)
- 2. 미등록 휴학 후 복학 및 재입학한 사람의 해당 학기
- 3. 장학금을 이중혜택 받은 사람(다만, 이중혜택을 허용하는 장학금은 수 혜 가능)
- 4. 학생으로서 품위를 떨어뜨려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킨 사람
- 5. 수업연한을 초과한 사람 <개정 2021. 3. 4.>
- 제14조(장학생 배정) ① 총장은 장학금 지급방침에 따라 대학별 재학생 수에 비례하여 장학생 수 또는 장학금액을 배정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배정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. <개정 2021. 9. 1.>
- ② 교외장학금은 장학금을 기탁한 장학단체나 개인이 정한 기준에 따르되, 그 기준이 없을 때에는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배정한다.
- 제15조(자격상실) 장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한다.
  - 1.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마치지 아니하는 경우
  - 2. 등록을 마치지 않고 휴학한 경우
  - 3. 학사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
  - 4. 장학금 급여신청서를 허위기재한 경우
  - 5. 그 밖에 위원회에서 부적격자로 인정한 경우
- 제16조(선정) 장학생의 선정은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.
- 제17조(장학생의 의무)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은 학업에 정진하여야 하며 학칙을 성실히 이행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.
- 제18조(운영세칙)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7년 7월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8월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90호, 2019. 9. 18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적용례) 제13조제5호는 2020학년도부터 적용한다.

부칙 <제597호, 2021. 3. 4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33호, 2021. 9. 1.>

이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 규정 제635호, 2021. 10. 1.> (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